(問) 火災豫防을 위한 安定點檢 및 指導啓蒙에 努力하시는 貴協會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當 호텔은 法上 特殊建築物로서 非常照明裝置를 設置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의 構造原理 및 設置方法에 대한 基準이 모호하여 아직껏 是正치 못하고 있읍니다. 非常照明裝置에 대한 상세한 解說을 부탁합니다.

(答) 火災로부터 人命安全 및 財產保護에 努力하시는 貴下께 眞心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不特定 多數人이 出入하는 特殊建築物과 5層 이상의 高層建築物은 罹災시에 豫想되는 人命避難상의 混亂防止와 消火活動 및 人命救助에 圓滑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建物內에 非常照明裝置를 設置하도록 建築法施行令 第134條(73.9.1 制定公布)에서 規定하고 있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읍니다.

對象建物 : 5層 이상의 建築物 또는 3層 이상의 特殊建築物(73.9.1 이후에 建築된 것에 限함)

設置場所 : 居室, 主된 複道 및 階段, 通路部分

構造 : 火災에 대하여 安全하고 豫備電源에 의한 照明이 可能한 構造로 하되 바닥면에서 1룩스 이상의 照度를 維持하여야 할 것.

以上과 같이 同令에서는 非常照明裝置設置對象物 및 場所 등에 대해서 概括的으로 規定하고 있을 뿐이에 대한 設備構造 및 細部 施行規則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施行함에 있어 많은 問題點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罹災시 人命避難活動 등을 위한 非常照明裝置 設備는 外國의 防火規定 등을 參照하여 볼 때 이들 設備에 使用하는 照明器具, 電氣配線 電源 등의 一般的인 構造原理는 다음과 같읍니다.

첫째 : 照明器具

1. 照明器具(照明커버, 기타 照明器具에 附屬된 것을 포함)內의 主要한 부분은 不燃材料로 할 것.

2. 照明器具는 白熱燈, 螢光燈 또는 水銀燈으로 할 것.

3. 防電燈(螢光燈 또는 水銀燈)

相談코너

安全點檢

의 安定器는 耐熱性 外函에 收容할 것.

둘째 : 電氣配線

1. 電氣配線은 다른 電氣回路(電源 또는 誘導燈에 接續하는 부분을 除外)에 接續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도중에 一般人이 쉽게 電源을 遮斷할 수 있는 開閉器를 設置해서는 안된다.

2. 照明器具의 救出線과 電氣配線은 직접 接續한 것으로 그 도중에 콘센트, 스윗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設置하여서는 안된다.

3. 電氣配線은 耐火構造의 主要構造部에 埋設하거나 다음에 揭記한 配線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防火措置를 講究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金屬管工事 또는 可撓電線管工事에 의한 配線, 耐火構造의 바닥 혹은 壁 또는 防火門으로 區劃된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設置한 配線, 버스닥트 또는 MI 케이블을 使用한 配線).

셋째 : 電 源

1. 常用電源은 蓄電池 또는 交流低壓屋內幹線에 의한 것을 使用할 것.

2. 豫備電源은 蓄電池設備, 自家用 發電設備 또는 非常專用受電設備로 할 것.

3. 豫備電源은 常用電源이 끊어진 경우에 自動的으로 交替되어 接續되고 常用電源이 復舊된 경우에도 自動的으로 交替되어 復歸하여야 할 것.

4. 蓄電池를 豫備電源으로 使用할 경우에는 自動充電裝置, 時限充電裝置를 갖는 蓄電池로서 항시 充電狀態를 維持할 것.

5. 常用電源 및 豫備電源의 開閉器에는 非常照明裝置用이라고 表示할 것.

6. 豫備電源은 20分 이상 계속하여 非常照明裝置를 點燈할 수 있는 容量이어야 할 것. 다만 높이 36m 이상 건축물의 豫備電源은 1時間 이상 所要電力을 供給할 수 있는 容量으로 할 것.

이상과 같이 非常照明裝置에 대한 一般的인 構造原理에 대하여 記述하였읍니다. 貴 호텔은 上記한 構造의 非常照明裝置를 設置하여 罹災시 發生될 수 있는 人命避難의 混亂을 豫防하여야 되겠읍니다.

趙 重 達
〈防災研究部 代理〉

相談코너

保險相談

(問) 生命保險에서는 保險料 納入 猶豫期間을 契約者에게 주는데 火災保險에서도 保險料 納入猶豫期間을 줍니까?

(答) 保險料 納入猶豫期間을 設定한 意義는 保險者가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에게 保險料納入에 必要한 餘有期日을 주기 위해서 또는 保險者 內部의 集金組織이나 그들의 代理店에 集金期間上의 便宜를 주기 爲해서 設定된 것으로 1年 契約의 滿期時 更新할 必要가 있는 契約에 保險契約者의 更新意思表示가 있을 때 限해서 認定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回의 保險料 納入으로 保險期間이 끝나고 更新必要가 없는 短期契約의 保險에서는 猶豫期間이란 것은 의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生命保險에서는 大部分의 保險이 長期間에 걸쳐 有效한 長期保險이기 때문에 保險料도 1回의 納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數次에 걸쳐서 納入하는 方法을 쓰게 됩니다. 더우기 長期保險은 貯蓄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불입한 금액이 있는데 납입일에 보험료 납입이 안됐다고 해서 保險契約이 解止된다면 契約者에게 크게 不利益을 주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生命保險에서는 保險料 納入期日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保險料 納入猶豫를 주는게 慣例일 뿐만 아니라 約款上에도 明記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火災保險에서는 大部分의 契約이 1年 期間으로 保險期間이 設定되기 때문에 1年 또는 短期火災保險에서는 猶豫期間이 없읍니다. 그러나 火災保險에서도 長期貯蓄性 各種 保險에서는 猶豫期間이 生命保險과 같이 유예기간을 다 設定하고 있읍니다. 即 長期火災保險約款 8條, 長期家計綜合保險 9條 長期交通傷害保險 7條, 長期家族安全保險 7條, 長期家族交通傷害保險 8條 및 長期生活設計保險 9條 等에는 納入猶豫期間을 明記하고 있읍니다.

保險先進國인 外國의 例를 보면 1年 滿期火災保險에서도 保險契約者가 事前에 更新契約을 하겠다는 意思表示가 있을 때에는 15日間의 猶豫期間을 주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읍니다. 이때에 更新契約의 수락여부는 保險者의 意思決定에 따른 事項이지만 만약 保險者가 更新契約을 수락했을 경우에는 滿期後 保險料納入이 없었다 하드라도 15日 以內에 罹災가 發生했을 때에는 保險者가 그 損害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國內法上 또는 約款이나 慣例上 1年 滿期 火災保險의 猶豫期間에 對한 얘기는 없고 保險料의 領收 없이는 보상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實質的으로는 1年 滿期 火災保險에는 猶豫期間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保險料 年納條件의 一般長期火災保險에 있어서도 猶豫期間에 對한 明示가 없고 F.O.C(Foreign) 約款의 3年 契約에서도 猶豫期間의 設定이 없기 때문에 이는 再考되어야 할 問題라 생각됩니다. 勿論 外國의 경우를 보면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이 約款上에 明記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慣例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明記없이 그러한 慣例가 形成되어 있지는 않으며 關係當局의 外上保險契約 規制指示에 따라 支給期日이 30日 以內의 約速어음으로 保險料 現金納入에 가름할 수는 있지만 이때에도 所定期間의 利子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特히 特殊建物(法律第2482號에 依하여 付保 및 이의 每年 更新契約義務가 있는 建物)은 每年 更新契約하여야 할 義務保險이기 때문에 必然的으로 更新이 이루어져야 하는 保險契約의 特殊性으로 보아 保險契約者의 意思表示가 事前에 있다면 猶豫期間을 주는 것이 合理的이라 思料되지만 이는 保險契約者의 높은 保險認識과 信用이 先行되어야 함도 事實이라 하겠읍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 保險者의 關心이 적었으나 現今에 와서는 保險者는 勿論 關係機關에서도 이에 대한 硏究檢討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曺 秉 甲
〈業務部 代理〉